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⑤ - 용연서원(龍淵書院) 下

# 조경, 장릉의 지석문 지어 정헌대부에 올라

## 포천의 명소와 풍습 등 포천인 발자취 기록



최 중 규  
포천문화회 회장

▲ 조경(趙綱) 1586(선조 19)~1669(현종 10)

선생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신북면 가채리에서 살았으며 신북면 한반위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자는 일장 호는 용주·주봉·간옹이며 본관은 한양이다. 절충장군 수권의 증손, 공조좌랑 현(玄)의 손, 봉사 익남의 자이고 유계의 외손이며, 이조판서 김천의 사위이고, 윤근수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특출해 주위 사람들이 기재라고 칭찬했다. 1612년(광해군 4) 24세에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광해군의 정체가 어지러워 위치고, 이어집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그리는 일이 많았으므로 거창으로 들어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재학사들을 불러 모을 때 유일로 고창현감과 경상도사에 연이어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이가 지났었다. 이듬해에 형조좌랑에서 목천현감으로 전직되어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 학교를 정비하니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많이 받았다. 1626년(인조 4)에 정사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연이어 사헌부, 사간원에 있다가 되었다.

1627년(인조 5)에 후금이 침입하여 안주와 평양을 이르러 백성들의 호패를 풀어 섬기에 걸어 놓고 도망갔다. 이때 그는 사서로서 문화 있는 김육과 함께 상소하여 호패법을 혁파하여 인심을 수습하게 되었다. 인조가 강도로 출몰하면서 세자를 시켜 전주로 내려가 군대를 위무하게 하니 수행하였다. 적이 얼마 후에 강화조약을 맺고 돌아갔다. 이때 지령으로 있으면서 호서절도사 유림이 능침을 벌거숭이로 만든 사람을 처벌 받고 용서해준 것과, 간관 윤환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홍립의 죄상을 논하는 상소를 했다가 물러났다. 다음해에 교리가 되고 또 지령이 되었다.

1631년(인조 9)에 사간원한남으로 있다가 정랑이 되었으며, 상소사건으로 말미암아 부교리가 되고, 의직으로 지례현감으로 나아갔다. 1633년(인조 11)에 다시 이조정랑이 되었다가 1635년(인조 13)에 집의가 되었고, 잘못을 지적한 상소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66번지에 위치한 용연서원은 1691년(숙종 17)에 창건됐다.

때문에 체직되었다. 다시 문헌군수로 나갔다가 내직으로 돌아와 군기시정에 임명되었다. 1636년(인조 14) 사간으로 응지하여 봉사를 올렸는데 '왕자의 전택이 제도를 벗어난 것과 장릉의 빈전 역사에 대한 상각이 법도가 없다는 것을 말했고, 좌의정 홍서봉 부자의 탐학을 고하였다. 이 때문에 두 번째로 하옥되었다. 이때 풍지의금부사 민형남과 경연관 유백회가 간관을 가두는 일은 2백년 내에 없는 일이라고 간하였으나 두 사람을 체직하고 말았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끝나고 묘당에서 척화자 10인을 논죄할 때 다시 대상이 되었으나 도승지 이경석이 계로써 만류하고 임금의 명으로 논죄를 피하였다. 1639년(인조 17)에 시작하고 고한거창으로 돌아와 있다가 1640년(인조 18)에 사간으로 다시 임명되어 시무책을 상소했다.

1643년(인조 21)에 일본에 통신부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복명하니 그 논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통정대부로 승진하고 형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얼마 후 김제군수로 임명했는데 대신들이 왕에게 풀려 전주 부윤으로 전직하였다. 1645년(인조 23)에 다시 사간이 되었다가 상소가 화근이 되어 체직되었다. 그후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는데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했다.

1646년(인조 25) 도승지에서 대사간으로 전직되어 미처 사은하기 전에 특별히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로 곧 사퇴했다. 얼마 후 예조판서가 되어 재성의 일을 겸임하게 되었다. 다시 이조판서에 전직되어 사퇴하고자 했으나 허락하지 않아서 그대로 종사하였다. 다음해에 대사헌으로 전직되었다. 1649년(인조 27)에는 내의원의 일을 보고 있었는데, 왕이 위독하자

임시한 바, 이때 인조가 흥하였다. 이 죄로 인하여 정승에서 물러나 한때 복상되었다가 이조판서가 되고, 다시 예조판서로 옮겼다. 그해 9월에 장례에 참석하고 졸곡이 끝난 뒤 사헌 명칭의 편액이 걸려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서원은 건물 내벽에 액자로 꾸며진 서원의 상량문이 걸려 있다.

강당에는 대청마루로 오르는 동서의 양 계단이 있으며, 온돌방 앞에 별도의 계단이 있다. 이 강당 건물도 근래에는 학문 연마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보다는 주로 향사를 준비하거나 서원 관련 임원들의 회합 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1650년(효종 1) 청나라의 사문사가 인조가 죽었을 때 사표에 활부 왕의 조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죄삼아 이경석과 함께 의주의 백마성에 안치토록 하여 이듬해 풀려 나왔다.

1653년(효종 4) 부모 공양을 위하여 회양부사로 나아갔다가 이듬해 사직하고 돌아왔다. 1655년(효종 6) 이미 나이 70을 넘으니 기로라 하여 왕은 본도에 명하여 쌀과 고기를 하사하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다시 이를 하사했다. 1661년(현종 2)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어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669년(현종 10) 죽으니 나이는 84세였다. 숙종 때 정학사에 녹선되었으며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간이다. 포천의 용연서원 춘천의 문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용주집』, 『동사록』이 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많은 업적을 쌓았을 뿐 아니라 포천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포천의 명소를 비롯하여 풍습과 포천인의 빛나는 발자취를 글로 적어 오늘에 전한 보람으로 후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견성지』를 제일 먼저 착수하였다.

신도비명은 미수 허목이 찬했다. ▲용연서원의 구성과 배치 용연서원은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쪽으로는 시야가 트이면서 들이 펼쳐져 있다. 최근에는 주택이 뿔뿔이 있지만, 아직도 서원의 위치에서 배를 보고 있었는데, 왕이 위독하자

향을 살필 수 있다.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덕형 선생과 조경 선생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강당 뿐이다. 거의 모든 서원에서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실이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장판교, 서고, 제기고, 고사 등도 갖추지 못하였다. 강당 건물이 향사를 대비해서 쓰이는 유일한 건물이다. 고사 대신 약간 떨어진 곳에 용연서원 재실이 있어 서원의 관리를 맡고 있다.

용연서원의 건축양식은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소박하여, 건물의 규모도 크지 않다. 대체로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된 19세기 서원의 단순한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① 강당 강당은 유생들이 경학을 공부하던 서원 건물의 하나이다. 강당의 일반적인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다. 서원 경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넓은 대청마루와 온돌방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건물 중앙의 처마 밑에 서원 명칭의 편액이 걸려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서원은 건물 내벽에 액자로 꾸며진 서원의 상량문이 걸려 있다.

강당에는 대청마루로 오르는 동서의 양 계단이 있으며, 온돌방 앞에 별도의 계단이 있다. 이 강당 건물도 근래에는 학문 연마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보다는 주로 향사를 준비하거나 서원 관련 임원들의 회합 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② 사당 용연서원의 사당, 사우 역시 이 서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한 시설물이다. 이덕형, 조경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불과 가을을 제향하는 곳이다. 사당의 위치는 정침 동쪽으로 하고, 규모는 1칸의 장대석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겹처마 맞배지붕 이양공에 방풍판을 단 목조기와로 축조되었다. 안에는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펴 두었다. 그리고 중간 도리 밑에 중문을 만들고, 칸마다 4쪽의 복합문을 달았다. 복합문 밖에 3급인 두 섬돌을 놓았는데, 동쪽을 등재하고, 서쪽을 서재라 부른다. 사당 안 동쪽과 서쪽의 벽에는 큰 깨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서쪽 깨에는 유서와 의문을, 동쪽 깨에는 제기를 각각 보관한다. 안쪽 중앙 좌우 측에는 조경과 이덕형의 신위와 영정을, 복단에 난향하여 모셨다. 사당 주변에는 네모난 담을 쌓고 앞 쪽에 외문을 낸다. 외문은 사당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당의 중문과 마주보게 된다. 이밖에 용연서원에는 외삼문, 내삼문, 홍살문 등의 시설물이 있다. 홍살문은 최근에 재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원 고유의 홍살문 양식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⑧

##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은 경찰의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경찰은 시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경찰고유의 직무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별하지 않고, 사법경찰의 임무를 일반경찰임무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영미법계경찰에서의 검찰관은 공소권에만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경찰관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특별한 권력을 지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대신하여 일반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봉사기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자치경찰제의 이념은 대체로 민주화·중립화·분권화를 들 수 있다. 먼저 민주화는 지역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화는 중앙정치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연 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분권화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차이는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자치경찰의 이념을 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이념의 진전한 구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주민민족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 즉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경찰업무의 중점이 옮겨지게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주민협력 활성화이다. 대다수의 경찰관이 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관이 됨으로써 애郷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게 되어,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민경협력치안이 내실화 될 수 있다.

셋째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 시정조치도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고, 지역단위의 조직이 때문에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을 하기가 쉬워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도 친절할 수 있으며, 경찰간부가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인사행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으며 무수한 실적을 거양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단점으로는 첫째로 경찰이 일반행정의 부속물인 감이 있어 대체적으로 집행력이 약하고 경찰기관의 상호응원이 어려워 자제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의 많은 예비경찰력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기동성이 적다는 점이다. 둘째로 범죄수사나 교통단속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광역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독립된 경찰체제로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찰되면 경찰간부도 이동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부패를 조려할 수도 있다. 넷째로 인사에 대한 지방정치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통제력이 미흡하게 되면 지휘·감독과 적절한 배치가 곤란하여 근무강이 해이해지게 될 위험이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인력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없어 사기가 저하될 염려가 있으며, 유능한 형사와 같은 전문가를 갖기도 어렵다. 또한 재정규모가 적을 때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특수시설도 갖추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도도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을 혼입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이며, 오늘날 전통적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국가에서도 전적으로 자치경찰제도만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 목적에 따라 국가경찰제도를 가미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업체 대봉매리트



- 1955년 : 사동리의 정일
- 1983년 : 남양주시청 대리점 OPEN
- 1990년 : 양주시청 대리점 OPEN
- 1994년 : 각종 비닐 포장재 전문생산업체
- 1996년 : 하남시청 (주) 비닐 의 납품개시
- 1999년 : 용인시청 대리점 납품개시
- 1999년 : 수원시청 (주) 비닐 의 납품개시
- 2000년 : 파리프 경찰(주) (주) 비닐백 우리 2공장 설립
- 2004년 : 농업 하나로 쇼핑백 납품개시
- 2007년 : 매리트 비닐포장 대리점 OPEN
- 2008년 : 대인 비닐포장 대리점 OPEN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 비닐 쇼핑백



### 비닐 제품



###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